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졸취업안전보장원 설치 등 〉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41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가. 제장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3
나. 총괄의견	5
2. 주요 조문별 검토	8
가. 목적(안 제1조)	8
나. 정의(안 제2조)	9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1
라.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안 제8조)	14
마. 고졸취업안전보장원 등 설치 근거 마련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6
바. 고등학교졸업자 정보관리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22

사. 고등학교졸업자 등에 관한 지원(안 제14조 및 제15조)	25
아. 고용안정공제회(안 제16조)	27
자. 고등학교졸업자 권익 보호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29
차. 벌칙(안 제19조)	33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0일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2025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과도한 학력 및 학벌주의로 여러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한 단면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및 고용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현재 교육 관련 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여러 정책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 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을 둠(안 제9조).

라. 고졸취업안전보장원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를 둠(안 제10조).

I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제정안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고졸취업안전보장원 등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은 총 20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제4조는 총칙 규정으로 이 법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 등의 책무를 두고 있고, 안 제5조~제8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9조~제13조까지는 고졸취업안전보장원 및 보장센터 등 지원기관의 설치 근거 및 운영, 고등학교졸업자 정보관리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16조는 고등학교졸업자 및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고용안정공제회 등을 지원 정책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권익보호 및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법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의 구성 체계

해당 조항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
제7조(자료제공등의 요청 등)
제8조(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
제9조(고졸취업안전보장원 설치 및 운영)
제10조(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 및 지부의 설치·운영)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2조(고등학교졸업자 정보관리플랫폼의 설치·운영 등)
제1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4조(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지원)
제15조(고등학교졸업자 채용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고용안정공제회지원)
제17조(고등학교졸업자 권익 보호)
제1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9조(벌칙)
제20조(양벌규정)

나. 총괄의견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업 경로로 정착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 낮은 임금수준, 직무 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실증자료에 따르면, 직업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안정성이나 정규직 유지 가능성이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¹⁾,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졸 이상인 경우 8.3개월이나 고졸 이하인 경우 1년 5.6개월로 나타났으며²⁾, 고등학교 졸업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대학교 졸업자의 65.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³⁾되는 등 현재 노동시장에서 학력은 채용, 직업안정성, 임금 등에 있어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이와 같은 상황은 청년층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대학 진학이 곧 안정적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신념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높은 사교육비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학 진학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다시 고졸 인력의 사회적 위상 저하와 인력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과도한 학력주의와 교육비

1) “취업청년의 초기 일자리 변동과 고용안정성”(강순희,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 2016.11.)

2)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舊)통계청, 2024.7.)

3)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고용노동부, 2025.4.)

부담이 고졸자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더욱 제약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고졸자가 단순히 “대학 진학 실패자”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노동시장 주체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고졸취업 활성화는 청년노동시장 고학력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과 대졸 이상 실업률 상승이라는 일자리 구조적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고졸자에게 맞춤형 직무훈련, 취업·경력관리 서비스, 차별금지제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고졸자 맞춤형 지원 법제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실제 노동시장 수요와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단순한 직업훈련이나 경험 제공에 그쳐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존 청년고용 관련 법령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고졸자를 지원하고 있어⁴⁾ 개별 프로그램 간 연계·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복 지원이나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도 ‘대학 진학이 곧 안정적 취업’이라는 관념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제도적 지원

4)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졸 청년 대상 양질의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 등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중앙취업지원센터)-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 18개소)-직업계고 연계 운영

만으로는 고졸자의 사회적 위상 향상과 장기적 노동시장 통합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졸자 취업 활성화 정책은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노동시장 수요, 교육·훈련 체계, 사회적 인식 개선, 정책 집행 주체 간 협력 체계 등 다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설계·운영해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겠음.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고등학교 졸업자도 예외 없이 취업지원 정책·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 내에서 고등학교 재학 단계 및 졸업 청년에 대해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재학 중 진로탐색·상담), 고교일학습병행, 미래유망 분야고졸인력양성(AI, 로봇 등 신기술 훈련), 일경험 지원(기업탐방 등 실무 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취업지원정책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라는 학력 기준 이외에 생애 주기·대상별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음도 감안할 때, 제정법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하에서는 주요 조문별 검토를 통해 법안 심사 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였음.

1.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제정안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은 해당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제명과 함께 법률의 입법취지를 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규율대상의 범위를 명시하고, 법률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그런데, 안 제1조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촉진”과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제정 취지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으나, 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및 고용유지,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7조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권익 보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의 목적 조문은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목적·가치를 병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고등학교졸업자 및 고등학교 졸업취업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3. “고등학교졸업자”란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고등학교졸업취업자”란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한 사람으로서 기업 등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정안은 정책대상인 “고등학교졸업자”를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원 대상자의 연령층이 광범위하게 분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취업지원정책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라는 학력 기준 이외에 생애주기·대상별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의 정의에 따라 “대학진학 후 중도 탈락자⁵⁾”의 경우는 정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 초기에 중도탈락한

5) ‘중도 탈락자’는 제적 학생을 의미하며,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유급, 수업 연한 초과, 기타 사유 등에 의해 학적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함.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고등교육통계편」(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유사한 노동시장 특성(낮은 임금, 직무 불일치 등)을 가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 제정안에서 지원하려는 정책대상에 이를 포함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조문정비 사항으로, 안 제2조제3호는 “고등학교졸업자”를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상 특성화고등학교등은 고등학교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안 제2조제4호는 “고등학교졸업취업자”를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한 사람으로서 기업 등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제정안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규정함.

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졸업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현황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사가 연도별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과 관련된 계획·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목적에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의가 있음.

다만, 제정안은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기본계획·실태조사 공표, 실태조사 주기 등에 대한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은바, 그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조문정비 사항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의 조 제목을 각각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 시행계획”으로 안 제5조제2항제1호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기본계획의 공표 및 보고 등을 규정한 입법례]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주기와 공표를 규정한 입법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라.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안 제8조)

제정안은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제정안
제8조(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 ①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보장과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8조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는 규정으로, 고졸 취업 지원과 관련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및 추진실적 점검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간 정책 연계와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행정안전부는 동 위원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보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기

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⁶⁾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 존속기한 명시⁷⁾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고졸취업안전보장원 등 설치 근거 마련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정안은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졸취업안전보장원 및 보장센터 등의 설치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정안
제9조(고졸취업안전보장원 설치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보장과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장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 연구 2.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3. 고등학교졸업취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회 운영 4. 고등학교졸업자에게 적합한 직종의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졸업취업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연구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 및 지부의 설치·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장원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이하 “보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고용센터 및 시·도교육청에 보장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③ 보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보조 2. 고등학교졸업취업자가 근무하는 기업 등의 부당한 노동환경감시 및 구제 3.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진로 발굴 업무 4. 고등학교졸업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지원 5. 고등학교졸업자 및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보장센터는 특성화고등학교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지부를 둔다. 각 지부에 파견된 직원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관련 상담
 2.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안내
 3. 고등학교졸업자 및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취업 추적 관리
 4. 기업에 대한 고등학교졸업자 홍보
 5. 연수 및 교육
 6. 기업 연계
 7. 고등학교졸업취업자 부당 노동 환경 감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보장센터 및 지부의 직원 채용 및 배치 기준 등 보장센터 및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장원, 보장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이하 “보장원”) 및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이하 “보장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종합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음.

특히, 고용노동부 내에 설치되는 보장원(중앙조직)과 현장 중심의 보장센터 및 지부(지역조직)로 구성된 운영체계는 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지도와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전주기적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고졸취업자 관련 통계, 기업 정보, 취업 유지율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정보관리플랫폼” 구축 규정을 둠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보장원 등의 기관의 설치 근거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장원 및 보장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

는데 그 소속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구체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부속기관’인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인지 불분명한데,

「정부조직법」 제4조⁸⁾는 부속기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도록 한바, 법률로 부속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법률로 부여하고, 설립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고용정보원(특수법인) 설립 근거 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또한, 보장센터는 특성화고등학교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지부를 둔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교육자치단체 소관인 특정 학교 내 중앙행정기관의 지부를 설치하는 형태로서, 학교 자율성과 교육청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파견”을 통해 지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 제9조제3항은 보장원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제3호는 “고등학교졸업취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회 운영”으로서 보장원이 공제회의 운영을 직접 수행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공제회의 운영은 다른 각호의 업무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공제회의 운영은 재정·회계 독립성과 법인격이 필요한 사무이며, 공제사업의 주체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보장원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 제16조에서 공제사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바, 해당 사무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10조제4항은 지부의 업무로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관련 상담, 취업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안내, 연수 및 교육, 기업연계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진로교육, 직업체험, 기업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부가 관련 프로그램

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교 재학생·졸업생 등에 대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진로상담·일경험·훈련·취업연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졸 청년 대상 양질의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 등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현행 지원체계와 기능·역할 등이 중복되는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관계부처 의견으로서, 기획재정부는 보장원의 역할, 업무, 차별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고졸자 우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 제도개선, 노동부, 교육부, 한국고용정보원 등 타 기관과의 중복 및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보장센터 및 지부의 기능으로 명시된 “부당한 노동환경감시 및 구제”에 관해서는 “자. 고등학교졸업자 권익 보호 등(안 제17조 및 제18조)”(검토보고서 29p.)에서 기술함.

바. 고등학교졸업자 정보관리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제정안은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관련 정보시스템인 “고등학교졸업자 정보관리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제정안
제12조(고등학교졸업자 정보관리플랫폼의 설치·운영 등) ① 보장원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졸업자 정보관리플랫폼(이하 “정보관리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촉진과 정보관리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라 한다)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고등학교졸업자(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고등학교졸업자 정보관리플랫폼(이하 “정보관리플랫폼”)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졸업자 취업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다만, 안 제13조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촉진”과 “정보관리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즉,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법률로 정한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바, 제정안은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두고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으로 “취업 촉진 및 플랫폼 구축·운영”이라는 포괄적 목적만 규정하고 정보관리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실무상 어떤 정보가 최소한으로서 수집될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유사 입법례로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신고자 및 구조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위치정보 등 수집가능한 개인정보를 명확히 열거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입법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소방대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신고자 및 구조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및 주민등록번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아닌 사람이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구조대상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 이동경로를 포함한다)
3.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

따라서,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사. 고등학교졸업자 등에 관한 지원(안 제14조 및 제15조)

제정안은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구직 관련 교육비·촉진비와 고등학교졸업자를 채용한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정안
제14조(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고등학교졸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직 관련 교육비: 구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받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2. 구직 활동 촉진비: 구직 활동 기간 동안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고등학교졸업자 채용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졸업자를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고등학교졸업자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고등학교졸업자를 위한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 등을 시행하는 경우 4. 고등학교졸업자들을 위한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직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고졸자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생활안정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졸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거나 특별 채용·인턴제도·현장실습 등을 시행하는 기업·공공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안 제14조에서 규정한 구직 관련 교육비와 촉진비 지원은 다른 고용·복지 지원 제도(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교일학습병행,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 고용안정공제회(안 제16조)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공제회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제정안
제16조(고용안정공제회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공제회 사업 2.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6조는 단순 채용 지원을 넘어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고용안정과 지속적 취업 지원을 위한 공제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통상적으로 공제사업⁹⁾은 주로 특정 직역 또는 단체의 조합원들이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한 사적단체인 공제조합이나 공제회¹⁰⁾에서 수행하며, 주무 부처 장관은 이러한 공제사업·단체를 감독·관리하는

9) 공제(共濟)사업은 회원·조합원 등이 일정액을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질병·재해·손해 등 미리 약정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도래할 수 있는 불확실한 경제적 위험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업과 유사하나 조합원 상호 간의 위험 분산과 생활 안정, 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0) 건설공제조합,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공제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조문정비 사항으로, 조 제목에 명시된 고용안정공제회에 대해 본문에서 언급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문에 “고용안정공제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거나 조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자. 고등학교졸업자 권익 보호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제정안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보장센터의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절차와 권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

제정안
제17조(고등학교졸업자 권익 보호) ① 누구든지 고등학교졸업자 및 고등학교 졸업취업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한 사실 및 그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장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장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보장센터는 고등학교졸업취업자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고등학교졸업자 및 고등학교졸업취업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신고·조사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고졸 취업자의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

특히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센터의 직권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장치를 구축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임.

다만, 동 조문의 심사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7조는 고등학교졸업자 및 졸업취업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의 경우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조사대상이 노동환경이나 취업과정 등 특정한 분야·영역이 아닌 특정 대상(졸업자 및 졸업취업자)에 대해 발생한 모든 차별·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제정안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보장센터의 업무로 규정한 ‘고등학교졸업취업자가 근무하는 기업 등의 부당한 노동환경 감시 및 구제’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차별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기능 중복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2005. 7. 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하 생략)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진

정이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제정안의 보장센터의 조사업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조사방법은 제정안의 조사방법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장센터 조사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차. 벌칙(안 제19조)

제정안은 다양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정안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5.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안 제19조는 고졸 취업 지원 관련 지원금의 부정 수령,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고등학교졸업자 권익 침해 행위 및 신고 방해 행위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졸 취업 지원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다만, 모든 제재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됨에 따라 행위의 성격·피해 규모·사회적 영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가령, 안 제14조는 구직 관련 교육비 및 구직 활동 촉진비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안 제15조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거나 이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는 사업체, 고등학교졸업생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기업등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원 규모를 비교할 경우 개인이 받는 지원금에 비해 기업등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부정수급 처벌 수위는 지원 규모에 비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7조제2항(신고자 인적사항 누설·공개 등 금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는 권익 침해 또는 신고 방해로서, 개인의 권리 침해와 제도 신뢰성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피해 유형이 다르므로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의미와 실제 피해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은 불이익조치의 중대성에 따라 그 처벌을 달리하는 사례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정형은 “3년(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임.

또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누설·공개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대부분의 법률에서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상대적으로 제재 수준이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공익신고자 관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정형

구 분	「공익신고자 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신분상실 불이익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기타 불이익조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분상실 불이익조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기타 불이익조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분상실 불이익조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기타 불이익조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든 불이익조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모든 불이익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 의 인적사 항 등을 누 설·공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한편, 보조금·지원금 등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 구직촉진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비교적 처벌 수준이 높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반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의 경우와 같이 그 가벌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 강하게 처벌하는 사례도 있음.

[표] 지원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법정형

구 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1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구 류 또는 과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 공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그 외 부정수급 ⇒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제정안의 벌칙규정 심사 시에는 부정·위반 행위의 경중이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적 형량 규정을 검토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539